

의안  
번호

2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13호

다. 제출일자 : 2023. 11. 07.

라. 회부일자 : 2023. 11. 14.

### 2. 제안이유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신 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정신의료기관 지정, 예산 지원 등(안 제4조, 제10조)
- 마.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제정안은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치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본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를 비롯하여 12개구<sup>1)</sup>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북구 응급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관련하여 2021년 28건, 2022년 23건, 2023년 22건의 응급입원 사례가 있음.

### 〈 행정입원 건수 〉

(단위: 명)

분 류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건 수	28	23	22	73

1) 서울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응급정신질환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 상황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해 응급입원비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최근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피해자가 정신병력 질환자로 확인되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